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60
----------	-------

발의연월일 : 2026. 8. 20

발 의 자 : 이춘석 · 윤준병 · 안호영
朴芝源 · 양부남 · 정준호
김성범 · 한민수 · 소병훈
장철민 · 노종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북특별사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북특별사절의 활동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특사 활동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 공백으로 인하여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북특별사절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임무 수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북특별사절 활동에 대한 사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북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신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대북특별사절(제5항에 따라 2명 이상의 대북특별사절이 임명된 경우 수석대북특별사절을 말한다)은 임무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된 대북특별사절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15조(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대북특별사절(제5항에 따라</u> <u>2명 이상의 대북특별사절이 임</u> <u>명된 경우 수석대북특별사절을</u> <u>말한다)은 임무가 종료된 경우</u> <u>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u> <u>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u> <u>한다.</u>
<u>⑥</u> (생 략)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